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5 재물손괴치상,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명제(국선)
판 결 선 고 2025.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24. 8. 27. 02: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VIP 룸 내에서 그곳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아가씨 문제로 화를 내다가 격분하여 주점 내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0,000원 상당의 사기 재질의 안주 접시 3개, 맥주 5병, 맥주잔 6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트리고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부셨으며 위 맥주잔 파편 등이 테이블 인근에 있던 피해자 E의 오른발 부분에 튀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발가락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8. 27. 02: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북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건물 바깥으로 나갔으나 재차 위 제1항 기재 장소로 복귀하여 '출입문을 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출입문 확인 및 촬영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둢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 · 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주점에서 단순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술잔 등이 놓인 테이블을 뒤집어엎음으로써 인근에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출입문을 손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이 입은 재산상 손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수리비 등을 지급하여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민재 _____

 판사 공병훈 _____

 판사 문 혁 _____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19	재물손괴치상, 재물손괴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동현(기소), 황금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종필(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5. 4. 15. 선고 2025고합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E는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병 등이 놓인 테이블을 뒤집어 술잔, 테이블 등을 손괴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E에게 깨진 술병 파편 등이 튀어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도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서 손괴시킨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31

재판장 판사 왕해진 _____

 판사 이현석 _____

 판사 박민선 _____